



독도주권교육 추진 강화를 위한 상호교류협약서

대구대학교와 독도수호국제연대 독도아카데미는 대구대학에서의 영토주권에 대한 교양·선택 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독도탐방교육 훈련을 통하여 나라사랑 의식을 고취하고 독도주권교육 추진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위 기관이 교육생들의 국토수호 의지 함양 및 독도주권교육 추진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이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은 위 기관이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

제3조(협약의 이행) 위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긴밀히 협력한다.

1. 대구대학교에서의 영토주권교육 - 교양·선택 과목 수강생과 연계된 독도탐방훈련 · 현장교육 협력
2. 독도주권교육 및 독도탐방훈련을 통하여 진취적인 기상을 지닌 청소년대학생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3. 대학당국과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독도주권교육 강화라는 국가적 현안을 추진함으로써 실천하는 산학협력의 성공적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 및 홍보
4. 기타 위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상호 교류 협력 등

제4조(세부사항) 제3조의 상호협력 분야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 결정한다.

제5조(효력 및 유효기간)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별도 해지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변경·해지) 본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에 1개월 전 통보하고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2019. 1. 28.



사랑·빛·자유의 전당
대구대학교

대구대학교
총장 김 상 호

김 상 호



독도수호국제연대 독도아카데미
집행위원장 고 창 근

고 창 근